

「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」 공고

- IP활용전략지원, 특허기술평가지원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-

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9년도 「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이번 공고는 사전공고로써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>

2018년 12월 31일

특허청장



□ 사업 개요

-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(IP)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·제품·사업화 부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

□ 지원 대상

- (신청자격)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권(전용실시권 포함)을 보유한 중소기업
 - 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,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(제3조, 제8조)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
 - *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smba.go.kr>)에서 확인
 - *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으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(단,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)

□ 지원 내용

- (지원규모) 연간 77개 과제 내외(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)
- (지원방식)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
 -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, 사업수행사(컨설팅사)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
- (지원한도) 최대 6천만원 이내(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)
 - 기업부담금 :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~40%내 현물 및 현금 매칭

기업 매출액	50억 미만	50억 이상 ~ 100억 미만	100억 이상 ~ 300억 미만	300억 이상
기업 부담률	총 10%	총 15%	총 30%	총 40%
현금	5%	10%	20%	25%
현물	5% 이하	5% 이하	10% 이하	15% 이하

- * 기업 매출액 :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
- * 현금(기업부담금) :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

- (사업기간) 최대 5개월 이내
 - (사업운영) '19년 6월 ~ 11월 예정
 - * 수혜기업 선정 후,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
- 세부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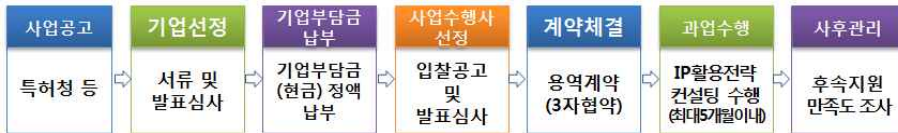
지원과제		주요내용
특허제품 혁신	최대 6천만원/ 최대 5개월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분야 특허분석 및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한 혁신적 해결책 제안 ○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발굴하여 타 분야 특허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상품(제품, 서비스, 비즈니스 모델)기획 ※ 2개 중 1개 선택지원
디자인제품 혁신	최대 4천만원/ 최대 4개월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종분야 특허분석 및 트리즈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개발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략 제시(3D 랜더링* 지원) * 3D 랜더링 : 컴퓨터그래픽으로 실제와 비슷한 양감·질감을 표현
(*) IP 사업화	최대 2천만원/ 최대 3개월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P전략 : IP경영, IP사업화 등 신청기업 맞춤형 전략 수립 ○ 3D 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※ 2개 중 1개 선택지원

* 「IP 사업화」는 후속지원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포함 최근 3개년 이내 수혜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, 당해연도 수혜기업도 연내 지원이 가능함

※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(10~40%)과 부가세(VAT)가 포함된 금액임

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○ 지원절차



○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19. 1월 ~ 2월 예정
- 신청방법 :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(www.kipa.org)에서 온라인 신청
 - * www.kipa.org → 로그인 → 사업화 지원 →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→ 사업신청(온라인)
- 제출서류 : IP활용계획서(온라인 다운로드), '16~'18년 재무제표
 - * 재무제표 :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
- 문의처 :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(02-3459-2937, 2814, 2943)

II 특허기술평가지원

1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

□ 사업 개요

-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, 사업타당성,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,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

□ 지원 대상

- (신청자격)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,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

□ 지원 내용

- (지원규모) 연간 80건 내외
- (지원한도)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%이내, 최대 5천만원 한도 (VAT는 신청인 부담)
- (지원내용)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「특허기술평가보고서」 작성지원
 - 「특허기술평가보고서」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,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, 사업타당성 검토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가능

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○ 지원절차



○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9. 1. 18(금) 13:00 ~ 2. 22(금) 18:00 * 추후 변경 가능

- 접수방법 : www.kipa.org → 로그인 → 사업화지원 →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→ 사업신청(온라인)
- 제출서류 : 사업화 활용계획서(온라인 다운로드), 평가비용견적서
 - *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“평가비용견적서”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
 - *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(18개)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기술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은행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발명진흥회, 농업기술실용화재단, 특허법인 다래, (주)웍스, 특허법인 다나, (주)나이스평가정보, (주)이크레더블, 특허법인 도담, (주)케이티지, 신용보증기금
- 문의처 :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(02-3459-2953, 2935)

2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

(1)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

□ 사업 개요

- o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 - *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(IP)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을 담보물의 가치로 인정

□ 지원 대상

-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

□ 지원 내용

- o (지원규모) 예산 소진 시 까지
- o (지원한도) 평가비용 5백만원 이내에서 일부 국고지원(VAT는 신청인 부담)
- o (지원내용)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, 금융기관은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
 - * 2019년 금융기관 : KDB산업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 * 취급은행 확대 예정

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o 지원절차



o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9. 1. 18 ~ 예산 소진시 까지
 - * 접수기간의 시작시기는 금융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접수방법 :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금융기관의 각 본·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·접수
 - * 주소 : (0613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
 - * 이메일 : inseok@kipa.org / 홈페이지 : www.kipa.org
- 제출서류 : 「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」 신청서, 평가의뢰서 및 관련 첨부 서류
- 문의처 :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(02-3459-2935)
 - * 세부추진 내용은 홈페이지(www.kipa.org → 사업화지원) →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) 사업공고(1월18일 공고) 참고

(2)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

□ 사업 개요

- o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·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
□ 지원 대상

-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
□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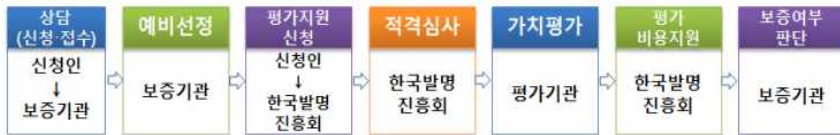
- o (지원규모) 예산 소진 시 까지
- o (지원한도) 평가비용 5백만원에서 일부 국고지원 (VAT는 신청인 부담)

- (지원내용)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,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

* 2019년 보증기관 :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

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- 지원절차



-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9. 1. 18 ~ 예산 소진시 까지
 - * 접수기간의 시작시기는 금융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접수방법 :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보증기관의 각 본·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·접수
- 제출서류 : 「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」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
- 문 의 처 :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(02-3459-2935)
- * 세부추진 내용은 홈페이지(www.kipa.org → 사업화지원 →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) 사업공고(1월18일 공고) 참고

(3)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

□ 사업 개요

-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
□ 지원 대상

-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

-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,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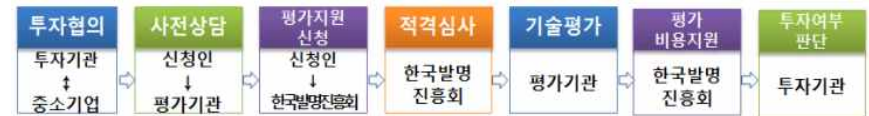
※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,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, 기업, 엔젤클럽 등을 포함

□ 지원 내용

- (지원규모) 예산 소진 시 까지
- (지원한도) 평가비용 15백만원 이내에서 일부 국고지원 (VAT는 신청인 부담)
- (지원내용) 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검토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이 맞춤형 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

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- 지원절차



-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9. 1. 18 ~ 예산 소진시 까지 * 추후 변경 가능
- 접수방법 :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- * 주소 : (0613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
 - * 이메일 : inseek@kipa.org / 홈페이지 : www.kipa.org
- 제출서류 : 「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」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
- 문 의 처 :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(02-3459-2935)
- * 세부추진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공고(1월18일 공고) 참고(www.kipa.org → 사업화지원 →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)

□ 사업 개요

- 발명진흥법 제 39조에 의거, 우수한 발명품의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정부·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

□ 지원 대상

- (신청자격)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권을 보유한 (전용·통상실시권 포함)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, 신청권리가 적용된 제품의 양산이 가능한 자

□ 선정 혜택

-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(최대 20개 정부·공공기관)
- 우수발명품 국·영문 확인서 발급
-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*
 - *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
-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(NEP)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*
 - * 신제품(NEP)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
-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추천 및 기술·품질평가 면제*
 - *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장 8조 8항(기타 조달청장이 면제를 인정한 제품)
-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

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